

공공 및 사적 작업에 의해 위험시되는  
문화재 보존에 관한 권고

**Recommendation concerning the Preservation of Cultural property Endangered  
by Public or Private Works**

1968.11.19

프랑스 파리 제 15차 유네스코 총회에서 채택



## 공공 및 사적 작업에 의해 위협시되는 문화재 보존에 관한 권고

### Recommendation concerning the Preservation of Cultural property Endangered by Public or Private Works

1968년 11월 19일

제 15차 유네스코총회에서 채택

1968년 10월 15일부터 11월 20일까지 파리에서 개최된 제 15차 유네스코총회는, 현대문명 및 그 장래의 진보가 특히 그 중에서도 세계의 여러 국민의 문화전통, 창조력과 사회적 및 경제적 발전에 의하는 것이라는 것을 **고려하여**,

문화재가 제종의 전통 및 과거의 정신적 업적의 성과 및 증거이며 따라서 세계의 여러 국민의 개성의 중요한 구성요소인 것을 **고려하여**,

문화재의 의의 및 거기에 따라서 전하여지는 것이 국민정신의 일부가 됨으로써 국민이 자기의 존엄을 자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문화재를 그 역사적 및 예술적 중요성에 따라 될 수 있는 한 보존하는 일이 불가결하다는 것을 **고려하여**,

문화재를 보존하며 또 공개하는 일이 1966년 11월 4일 제 14차 총회에서 채택된 '국제문화협력의 원칙선언'의 정신에 비추어 여러 국민의 상호이해를 증진하기 위한 수단이 되는 것이며 더 나아가서는 평화에 공헌하는 것이라는 것을 **고려하여**,

또한 모든 국민의 복지는 좋은 자극이 되고 유익한 환경의 존재에 의존하고 있으며, 역사의 각 시대에 속하는 문화의 보존이 이와 같은 환경을 만드는 일에 직접 기여하는 것을 **고려하여**,

한편, 세계문명이 산업화의 방향으로 나아가며 이런 변화가 국민의 발전과 정신적 및 민족적 완수에 담당하는 역할을 **인식하여**,

그러나 선사시대, 원사시대 및 유사시대의 기념물 및 유적과 많은 예술적, 역사적 또는 과학적으로 중요한 근년의 구조가 산업발전 및 도시화에 기인하는 공적 및 사적 공사에 의하여 점점 위협에 부딪치고 있다는 것을 **고려하여**,

인류의 문화유산의 보호 및 보존을 확보하는 것이 사회적, 경제적 발전을 진흥하는 것과 꼭 같이 정부의 의무인 것을 **고려하여**,

따라서 문화유산의 보존과 사회 경제적 발전에 따르는 여러 변화를 조화시킴과 동시에 관대한 정신으로 또한 적합한 계획을 참고로 하여 그 보존과 여러 변화와의 쌍방요구에 응하기 위하여 진실로 노력할 일이 긴급하다는 것을 **고려하여**,

똑같이 문화재를 충분히 보존하며 또 공개하는 일이 국내 및 국제관광을 진흥 시키며, 그럼으로써 이와 같은 인류의 재보를 소유하는 나라 및 지역의 사회적, 경제적 발전에 커다란 공헌을 하는 것을 **고려하며**,

끝으로 문화재 보존을 위한 가장 확실한 보증은 국민 자신이 문화재에 대하여 품는 존중 및 애착의 생각에 있을 것을 **고려하며**,

또 이와 같은 감정이 가입국이 취하는 적절한 조치에 의하여 크게 강화되어야 할 것을 **확신하고**,

이 회기의 의제 16 공적 및 사적 작업에 의하여 위협에 처한 문화재의 보존에 관한 제안을 **심의한 바**,

이 제안이 제 13차 총회에서 가입국에 대한 권고형식으로 국제적 규제되어야 할 것을 **결정한 바**,

1968년 11월 19일에 본 권고를 채택한다.

총회는 가입국이 각각 영역 내에 있어서 본 권고에 정한 규범 및 기준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입법 기타 조치를 취함으로써 다음 규정을 적용할 것을 권고한다.

총회는 가입국이 본 권고를 기념물과 역사적, 예술적, 고고학적 및 과학적 유적의 보존 및 보호에 대하여 책임을 갖는 단체 및 공적 및 사적 작업에 대하여 책임을 갖는 당국 또는 기관에 통보할 것을 권고한다. 또 교육 및 관광개발에 관한 계획을 작성하는 당국 및 단체에도 똑같이 통보할 것을 권고한다.

총회는 가입국이 본 권고를 실시하기 위하여 취한 조치에 대하여 총회가 정하는 기간 및 양식에 의하여 총회에 보고할 것을 권고한다.

## I. 정 의

1. 본 권고의 적용상 '문화재'란 다음의 것을 말한다:

(가) 부동산, 즉, 고고학적, 역사적, 과학적 유적 또는 종교적인 것이거나 비종교적인 것이거나를 불문하고 역사적, 과학적, 예술적 혹은 건축학적 가치를 갖는 구조물 기타의 물건(전통적 건조물군, 도시 또는 농촌취락중의 역사지구 및 아직 원형을 남겨 잔존하는 구시대의 제 문화에 속하는 민족학적 구조물을 포함). '문화재'라는 말은 지중에서 발견되는 고고학적 또는 역사적 유적에도 지상에 폐허로서 존재하는 같은 성격의 부동산에도 적용된다. '문화재'에는 당해 문화재의 주변에도 포함한다.

(나) 고고학적 또는 역사적 유적 기타의 장소에서 발견되는 문화적 중요성을 갖는 동산(부동산중에 소재하는 것 또는 부동산에서 회수되는 것 및 지중에 매장되고 있는 것을 포함).

2. '문화재'에는 건축학적, 고고학적 및 역사적 유적 및 구조물로서 주지되어 또 지정된 것뿐만 아니라 아직 지정되어 또는 분류되지 않는 과거의 증적, 예술 또는 역사적으로 중요한 근년의 유적 및 구조물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 II. 일반원칙

3. 문화재를 보존하기 위한 조치는 나라의 전 영역을 대상으로 할 것이며 일부 기념물 및 유적만으로 한정할 것이 아니다.

4. 중요한 문화재에 대하여는 지정되어 있느냐의 여부를 묻지 않고 그 보호를 위한 목록을 정비하여야 할 것이다. 목록이 아직 작성되지 않은 때에는 그 작성에 즈음하여 공적 또는 사적 작업에 의하여 위험에 처한 지구에 있는 문화재의 철저한 조사를 우선적으로 행하여야 할 것이다.

5. 다음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해당 문화재의 상대적 중요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가) 공적 및 사적 작업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부동산 문화재의 부지, 구조물 기타 제 형태의 전체를 보존할 것;

(나) 공적 및 사적 작업을 위해 변용하도록 되어 있는 지구에 있는 문화재로서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존하며 이전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을 구제할 것;

6. 전기의 조치는 문화재의 성격, 규모 및 입지조건과 문화재가 부딪칠 위험의 성질에 따라서 달라져야 할 것이다.

7. 문화재의 보존 또는 구제를 위한 조치는 예방적 및 시정적 성격인 것이어야 할 것이다.

8. 전기의 예방적 및 시정적 조치는 문화재를 훼손하며 멸실할 우려가 있는 다음과 같은 공적 또는 사적 공사에 의하여 위협에 부딪히는 문화재의 보호 또는 구제를 목적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가) 도시의 확장사업 및 재개발사업에 있어 지정된 기념물은 보존되지만 경우에 따라 비교적 중요하지 않는 구조물은 제거되어 그 결과 역사적 관련성 및 역사적 환경의 파괴하는 것이 되는 것;

(나) 전기의 사업과 유사 사업으로서 전체로서 문화적 가치를 갖는 전통적 구조물군이 지정된 기념물을 포함하지 않았기 때문에 파괴될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행하여지는 것

(다) 개개의 역사적 건조물의 사려 없는 개조 및 수리;

(라) 주요도로의 건설 또는 변경에 있어 유적 또는 역사적으로 중요한 구조물군에 특히 위협을 미치게 하는 것;

(마) 관개, 수력발전 또는 홍수방지를 위한 댐의 건설;

(바) 파이프라인 및 송전선의 부설;

(사) 농작물(심경, 배수공사, 관개공사, 개간, 정지 및 식림을 포함한다);

(아) 산업의 발전 및 공업화된 사회의 기술적 진보에 수반하여 필요로 하는 작업(공항건설, 채광, 채석, 운하 및 항만의 준설 및 수리 등).

9. 가입국은 문화재의 역사적 관련성 및 연속성을 보존하기 위하여 공적 또는 사적 공사에 의하여 위협에 부딪히는 문화재의 현지보존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중대한 경제적 또는 사회적 사정 때문에 문화재를 이전, 방기하여 멸실하지 않으면 안 될 경우에는, 구제작업에는 해당 문화재의 신중한 조사 연구 및 상세한 기록 작성을 포함해야 할 것이다.

10. 구제작업과의 관련에서 이루어진 과학적 또는 역사적 가치를 갖는 연구결과는 특히 부동산 문화재의 전부 또는 대부분이 방기되고 멸실되었을 경우에는 공표하며

또한 기타의 방법에 의해서 장래의 연구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11. 공적 및 사적 작업에 의한 파괴로부터 구제하기 위하여 이전된 중요한 구조물 기타 기념물은 그러한 것이 이전에 놓여 있던 위치 및 자연적, 역사적 또는 예술적 환경과 유사한 장소 또는 환경에 놓여야 할 것이다.

12. 문화재의 구제작업에 의해서 입수된 중요한 동산문화재(고고학적 발굴에 의하여 회수된 대표적 표본을 포함함)는 연구용으로서 보존 또는 박물관(유적박물관을 포함), 대학 등의 시설에 진열하여야 할 것이다.

### III. 보존 및 구제조치

13. 공적 및 사적 작업에 의하여 위험에 처한 문화재의 보존 또는 구제는 다음의 조치에 의해서 확보하여야 할 것이며 그 상세한 것은 나라의 법령 및 제도에 의해서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 (가) 입법상의 조치;
- (나) 재정상의 조치;
- (다) 행정상의 조치;
- (라) 문화재 보존 및 구제를 위한 절차;
- (마) 제재;
- (바) 수리;
- (사) 보상;
- (아) 조언;
- (자) 교육.

#### 입법상의 조치

14. 가입국은 본 권고에 제기하는 규범 및 원칙에 따라서 공적 및 사적 작업에 의해서 위험에 처한 문화재의 보존 또는 구제를 확보하기 위하여 전국적 및 지방적 규모로 필요한 입법상의 조치를 취하며 또는 유지하여야 할 것이다.

#### 재정상의 조치

15. 가입국은 공적 및 사적 작업에 의하여 위험에 처한 문화재의 보존 또는 구제를 위해 충분한 예산이 준비되도록 확보하여야 할 것이다. 법체계 및 전통의 상위와 자력의 불평등이기 때문에 획일적인 조치가 채용될 수는 없지만 다음의 어느 것이

든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가) 문화재의 보호에 책임을 갖는 나라 또는 지방의 당국은 공적 및 사적 작업에 의하여 위험에 처한 문화재의 보존 또는 구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충분한 예산을 가져야 할 것;

(나) 공적 및 사적 작업에 의하여 위험에 처한 문화재의 보존 또는 구제(고고학적 예비조사를 포함)에 요하는 경비는 당해 공사의 예산의 일부로 할 것;

(다) 위의 (가) 및 (나)에서 말하는 두 방법을 병용할 수 있도록 할 것.

16. 보존 또는 구제를 위한 작업의 규모 및 복잡성 때문에 굉장히 다액 경비를 요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입법상의 조치, 특별보조금, 기념물을 위한 국가기금 기타의 적당한 수단에 의하여 추가적 자금을 획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문화재의 보호에 책임을 갖는 기관은, 공적 및 사적 작업에 의해서 위험에 처한 문화재의 보존 또는 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이러한 통상예산 외의 자금을 관리 또는 사용하는 권한을 주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17. 가입국은 예술적 또는 역사적으로 중요한 구조물(전통적 구조물군의 일부를 이룬 것을 포함)의 소유자 또는 도시 및 농촌취락에 있는 역사지구의 거주자에 대하여 공적 및 사적 작업에 의해서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당해 문화재의 특성 및 예술성을 보존할 것을 장려하기 위해 다음 어느 것이든 행하여야 할 것이다:

(가) 감시하는 일;

(나) 예술적, 건축학적, 과학적 또는 역사적으로 중요한 구조물(전통적 구조물을 포함)을 가지는 지방 당국, 기관 및 민간소유자가 당해 구조물을 현대사회의 필요에 적합한 기능을 갖도록 유지 또는 개조할 것을 보조금, 대부금 기타 수단에 의하여 원조하기 위하여 적당한 입법상 조치에 의하여 예산을 설치하는 일;

(다) 위의 (가) 및 (나)에서 말하는 두 방법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일

18. 당해 문화재가 지정되어 있지 않고 또는 기타 보호를 주어지지 않았던 경우에는 소유자가 적당한 당국으로부터의 원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19. 공적 및 사적 작업에 의하여 위험에 처한 문화재의 보존을 위한 예산조치를 취함에 있어서 나라 또는 지방당국 및 민간소유자는 당해 문화재의 본질적 가치 외에



관광자원으로서의 당해 문화재의 경제적 역할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 행정상의 조치

20. 공공 및 사적 작업에 의해 위협시되는 문화재 보존 또는 구제의 책임은 적당한 공적 단체가 지도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문화재 보호를 위한 공적 단체 또는 기관이 이미 설치되고 있는 경우에는 이들의 단체 또는 기관은 공적 또는 사적 공사에 의하여 초래될 위험에서 문화재를 보호할 책임을 지도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기관이 설치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공적 및 사적 작업에 의하여 위협시되는 문화재의 보존을 목적으로 하는 특별한 단체 또는 기관이 신설되어야 할 것이다. 헌법상의 규정 및 전통의 상위 때문에 획일적인 제도가 채용될 수는 없지만 다음과 같은 공통 원칙이 채용되어야 할 것이다:

(가) 문화재 보호에 대하여 책임을 갖는 당국의 대표자, 공적 및 사적 작업에 대하여 책임을 갖는 당국의 대표자, 도시계획에 대하여 책임을 갖는 당국의 대표자나 연구 및 교육을 위한 대표자로서 구성하는 조정 또는 자문을 위한 기관이 설치되어야 할 것이다. 이 기관은 공적 및 사적 작업에 의하여 위협시되는 문화재의 보존에 대하여 특히 공적 및 사적 공사를 위한 요건과 문화재 보존 또는 구제를 위한 요건과의 사이의 이해관계의 분쟁에 대하여 조언하는 권한을 가져야 할 것이다.

(나) 도시 기타 지방 공공단체에도 공공 및 사적 작업에 의해 위협시되는 문화재 보존 또는 구제에 대하여 책임을 갖는 기관을 설치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기관은 그 능력 및 요구에 응하여 나라의 기관 기타의 적당한 단체의 원조를 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다) 문화재의 보호에 대하여 책임을 갖는 기관에는 공공 및 개인적 작업에 의해 위협시되는 문화재 보존 또는 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전문직원(건축가, 도시문제 연구자, 고고학자, 역사학자, 감독관 기타 전문가 및 기술자 등)을 충분히 배치하여야 할 것이다.

(라) 문화재의 보호에 대하여 책임을 갖는 여러 기관의 업무, 공적 및 사적 작업에 대하여 책임을 갖는 여러 기관의 업무나 공공 및 개인적 작업에 의해 위협 시되는 문화재 보존 또는 구제 문제에 책임상 관계가 있는 기타 기관의 업무 간의 조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행정상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이다.

(마) 공적 및 사적 건설공사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역사지구, 유적 및 기념 물

(지정되어 있는지의 여부는 묻지 않는다)을 갖는 모든 지방 공공단체에 도시개발 계획을 담당하는 당국 또는 위원회를 설치하기 위하여 행정상의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21. 문화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 또는 고고학적 혹은 역사적으로 중요한 물건을 포함한다고 예상되는 장소에서의 공사를 수반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그 예비 조사의 단계에 있어서 결정에 앞서 당해 지역 또는 시, 동, 면의 수준에서 제종 계획을 작성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계획안중 어느 것을 선택하느냐는 것은 경제적 입장 및 문화재의 보존 또는 구제의 견지에서 가장 유리한 해결책을 채택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비교분석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 문화재의 보존 및 구제를 위한 절차

22. 다음의 사업을 결정하기 위하여 문화재에 위험을 미치게 할 우려가 있는 것은 공적 및 사적 작업이 시공되기 전에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철저히 조사를 행하여야 할 것이다:

(가) 중요한 문화재의 현지 보존을 위하여 취해야 할 수단;

(나) 필요한 구제작업(발굴하여야 할 고고학적 유적, 이전하여야 할 구조물 및 구제하여야 할 동산 문화재의 선택)의 규모.

23. 문화재의 보존 또는 구제를 위한 조치는 공적 또는 사적 공사가 시공되기 전에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취하여야 할 것이다. 역사적인 동, 면, 유적, 지구 등과 같은 각국의 의회에 의하여 보호하여야 할 고고학적 또는 문화적으로 중요한 지구에 있어서는 신규공사는 고고학적 예비발굴의 결과를 기다려 착수하여야 할 것이다.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문화재의 보존 또는 구제를 위하여 충분한 조치가 취해질 것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사를 연기하여야 할 것이다.

24. 중요한 고고학적 유적(특히 식별하기 어려운 선사유적), 도시 또는 농촌지역에 있는 역사지구, 전통적 구조물군, 구시대의 여러 문화에 속하는 민족학적 구조물, 기타 부동산 문화재로서 공적 또는 사적 공사 때문에 위험에 부딪칠 우려가 있는 것은 다음과 같이 지역설정 또는 지정방법에 따라서 보호하여야 할 것이다:

(가) 고고학적 유적에 대하여는 거기에 소재하는 폐허를 철저히 발굴 조사하며 또는 보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보호지역을 설정하며 또는 지정을 행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 문화재를 매수해야 할 것이다.

(나) 도시 또는 농촌중심부에 있는 역사적 지역 및 전통적 구조물군에 대해서는 보호지역을 설정하며 당해 문화재의 환경 및 특성을 보존하기 위하여 적절한 규칙(역사적 또는 예술적으로 중요한 구조물을 개변할 수 있을 정도에 대한 규제, 당해 지역에 세울 수 있는 신구조물의 양식 및 설계에 대한 규제 등)을 채택하여야 할 것이다. 기념물을 보존하는 것은 특히 역사적 도시 또는 지역에 있어서는 도시의 재개발 등에 대한 적절한 계획을 세울 경우의 필수요건의 하나로 하여야 할 것이다. 또 지정된 기념물 또는 유적의 주변지역 및 그 환경도 해당 지역의 관련성 및 특성을 보존하기 위하여 유사 규칙의 대상으로 해야 할 것이다. 신규의 건축에 적용되는 통상 규칙에 대하여 타당한 수정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며 신구조물이 역사지구 에 세워질 경우에는 그 통상 양식의 상업광고는 금지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상업 시설이 현명한 방법으로 행하는 표지에 의하여 그 존재를 표시하는 것은 허용할 수가 있다.

25. 가입국은 공공 및 사적 공사의 시행중에 고고학적 유물을 발견한 자가 될 수 있는 한, 신속히 그 뜻을 권한 있는 기관에 통고할 것을 의무를 갖도록 하여야 한다. 당해 기관은 신중한 조사를 행하여야 할 것이며 또 당해 유물이 중요한 것인 경우에는 철저한 발굴조사를 행하기 위하여 공사를 연기시켜야 할 것이다. 이 경우에는 공사지연에 대하여 타당한 금액의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다.

26. 가입국은 정부, 지방공공단체 기타 적당한 단체가 공공 및 사적 공사에 의해 위협시되는 중요한 문화재를 매수하는 형식으로서 취득할 수가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또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강제수용에 의하여 취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 제 재

27. 가입국은 공공 및 사적 작업에 의해 위협시되는 문화재의 보존 또는 구제에 대한 고의 또는 태만에 의한 위반행위가 자국의 형법에 의해서 엄벌에 처해질 것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이며 또 형법은 이런 종류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금 혹은 금고 또는 그 쌍방을 규정해 두어야 할 것이다. 또, 가입국은 다음과 같은 것을 행할 수가 있다:

(가) 가능한 경우에는 유적 또는 구조물의 원상복구를 당해 손괴에 대하여 책임을 갖는 자의 부담 아래서 행하는 일;

(나) 우연히 고고학적 발견이 있었던 경우에 있어서 부동산 문화재가 훼손하여 멸

실 또는 방치되었을 때에는 나라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을 지불하게 하는 일, 또 동산 문화재가 은닉되었을 경우에는 당해 문화재를 무상으로 몰수하는 일.

## 수 리

28. 가입국은 공공 및 사적 공사에 의하여 파괴된 문화재의 성질상 가능한 경우에는 당해 문화재의 수리, 복구 또는 재건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이다. 또 가입국은 지방당국 또는 중요한 문화재의 민간소유자에 대하여 필요에 응하여 기술적 원조를 주어 수리 또는 복구를 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미리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이다.

## 보 상

29. 가입국은 개인, 단체 및 시, 동, 면에 대하여 공공 및 사적 작업에 의하여 위험시되는 문화재의 보존 또는 구제를 위한 계획에 참가하도록 장려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한 조치에는 다음과 같은 것을 포함할 수가 있다:

(가) 고고학적 발견물을 통보하며 또는 인도한 개인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는 일;

(나) 공공 및 사적 작업에 의해 위험시되는 문화재 보존 또는 구제를 위하여 현저한 업적이 있는 개인(정부기관에 소속하는 자를 포함), 단체, 기관 또는 시, 동, 면에 대하여 상장, 기념장 기타 형식의 보상을 수여하는 일.

## 조 언

30. 가입국은 필요한 경험 또는 전문직원을 갖지 않은 개인, 단체 또는 시, 동, 면에 대하여 공공 및 사적 공사에 의하여 위험시되는 문화재의 보존 또는 구제에 대하여 적절한 기준을 유지시키기 위하여 기술적 원조를 주며 또는 감독을 행하여야 할 것이다.

## 교 육

31. 가입국은 공공 및 사적 공사에 의하여 위험시되는 문화재를 보존하며 또는 구제하기 위하여 국제협력의 정신을 갖고 자국 및 타국의 문화유산에 대한 자국민의 관심 및 존중의 생각을 환기 또한 계발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이다.

32. 전문적인 출판물, 신문기사, 라디오방송 및 텔레비전 방송에 의하여 무사려한 공적 또는 사적 공사가 문화재에 미치게 하는 위험의 성질 및 문화재의 보존 또는 구제에 성공한 사례를 공표하여야 할 것이다.

33. 교육기관, 역사 및 문화에 관계있는 여러 단체, 관광사업에 관계가 있는 공적 여러 단체와 대중교육에 관계가 있는 여러 단체는 무사려한 공공 및 사적 작업이 문화재에 미치게 하는 위험성을 주지시키기 위한 계획 및 문화재 보존을 위한 사업이 국제이해에 기여할 것을 강조하기 위한 계획을 가져야 할 것이다.

34. 박물관, 교육기관 기타 관계단체는 통제가 없는 공공 및 사적 작업에 의해 위협시되는 문화재를 보존 또는 구제하기 위하여 취하여진 조치를 소개하기 위한 특별전람회를 계획해야 할 것이다.

이상은 유네스코 총회가 파리에서 개최되어 1968년 11월 20일에 폐회를 선언한 그 제 15차 총회에서 정당히 채택한 권고의 진정한 본문이다. 이상의 증거로서 우리들은 1968년 11월 22일에 서명했다.



## **Recommendation concerning the Preservation of Cultural Property Endangered by Public or Private works**

19 November 1968

The General Conference of the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meeting in Paris from 15 October to 20 November 1968, at its fifteenth session,

**Considering** that contemporary civilization and its future evolution rest upon, among other elements, the cultural traditions of the peoples of the world, their creative force and their social and economic development,

**Considering** that cultural property is the product and witness of the different traditions and of the spiritual achievements of the past and thus is an essential element in the personality of the peoples of the world,

**Considering** that it is indispensable to preserve it as much as possible, according to its historical and artistic importance, so that the significance and message of cultural property become a part of the spirit of peoples who thereby may gain consciousness of their own dignity,

**Considering** that preserving cultural property and rendering it accessible constitute, in the spirit of the Declaration of the Principles of International Cultural Co-operation adopted on 4 November 1966 in the course of its fourteenth session, means of encouraging mutual understanding among peoples and thereby serve the cause of peace,

**Considering** also that the well-being of all peoples depends, inter alia, upon the existence of a favourable and stimulating environment and that the preservation of cultural property of all periods of history contributes directly to such an environment,

**Recognizing**, on the other hand, the role that industrialization, towards which world civilization is moving, plays in the development of peoples and their spiritual and national fulfillment,

**Considering**, however, that the prehistoric, protohistoric and historic monuments and remains, as well as numerous recent structures having artistic, historic or scientific importance are increasingly threatened by public and private works resulting from

industrial development and urbanization,

**Considering** that it is the duty of governments to ensure the protection and the preservation of the cultural heritage of mankind, as much as to promote social and economic development,

**Considering** in consequence that it is urgent to harmonize the preservation of the cultural heritage with the changes which follow from social and economic development, making serious efforts to meet both requirements in a broad spirit of understanding, and with reference to appropriate planning,

**Considering** equally that adequate preservation and accessibility of cultural property constitute a major contribution to the social and economic development of countries and regions which possess such treasures of mankind by means of promoting national and international tourism,

**Considering** finally that the surest guarantee for the preservation of cultural property rests in the respect and the attachment felt for it by the people themselves, and persuaded that such feelings may be greatly strengthened by adequate measures carried out by Member States,

**Having** before it proposals concerning the preservation of cultural property endangered by public or private works, which constitute item 16 on the agenda of the session,

**Having decided at** its thirteenth session that proposals on this item should be the subject of an international instrument in the form of a recommendation to Member States,

**Adopts** on this nineteenth day of November 1968 this recommendation.

The General Conference recommends that Member States should apply the following provisions by taking whatever legislative or other steps may be required to give effect within their respective territories to the norms and principles set forth in this recommendation.

The General Conference recommends that Member States should bring this recommendation to the attention of the authorities or services responsible for public or private works as well as to the bodies responsible for the conservation and the protection of monuments and historic, artistic, archaeological and scientific sites. It



recommends that authorities and bodies which plan programmes for education and the development of tourism be equally informed.

The General Conference recommends that Member States should report to it, on the dates and in a manner to be determined by it, on the action they have taken to give effect to this recommendation.

## **I. Definition**

1. For the purpose of this recommendation, the term 'cultural property' applies to:

(a) Immovables, such as archaeological and historic or scientific sites, structures or other features of historic, scientific, artistic or architectural value, whether religious or secular, including -groups of traditional structures, historic quarters in urban or rural built-up areas and the ethnological structures of previous cultures still extant in valid form. It applies to such immovables constituting ruins existing above the earth as well as to archaeological or historic remains found within the earth. The term cultural property also includes the setting of such property;

(b) Movable property of cultural importance including that existing in or recovered from immovable property and that concealed in the earth, which -may be found' in archaeological or historical sites or elsewhere.

2. The term 'cultural property' includes not only the established and scheduled architectural, archaeological and historic sites and structure, but also the unscheduled or unclassified vestiges of the past as well as artistically or historically important recent sites and structures.

## **II. General principles**

3. Measures to preserve cultural property should extend to the whole territory of the State and should not be confined to certain monuments and sites.

4. Protective inventories of important cultural property, whether scheduled or unscheduled, should be maintained. Where such inventories do not exist, priority should be given in their establishment to the thorough survey of cultural property in areas where such property is endangered by public or private works.

5. Due account should be taken of the relative significance of the cultural property concerned when determining measures required for the:

(a) Preservation of an, entire site, structure, or other forms of immovable cultural property from the effects of private or public works;

(b) Salvage or rescue of cultural property if the area in which it is found is to be transformed by public or private works, and the whole or a part of the property in question is to be preserved and removed.

6. Measures should vary according to the character, size and location of the cultural property and the nature of the dangers with which it is threatened.

7. Measures for the preservation or salvage of cultural property should be preventive and corrective.

8. Preventive and corrective measures should be aimed at protecting or saving cultural property from public or private works likely to damage and destroy it, such as:

(a) Urban expansion and renewal projects, although they may retain scheduled monuments while sometimes removing less important structures, with the result that historical relations and the setting of historic quarters are destroyed;

(b) Similar projects in areas where groups of traditional structures having cultural value as a whole risk being destroyed for the lack of a scheduled individual monument;

(c) Injudicious modifications and repair of individual historic buildings;

(d) The construction or alteration of highways which are a particular danger to sites or to historically important structures or groups of structures;

(e) The construction of dams for irrigation, hydro-electric power or flood control;

(f) The construction of pipelines and of power and transmission lines of electricity;

(g) Farming operations including deep ploughing, drainage and irrigation operations, the clearing and levelling of land and afforestation;

(h) Works required by the growth of industry and the technological progress of industrialized societies such as airfields, mining and quarrying operations and dredging and reclamation of channels and harbours.

9. Member States should give due priority to measures required for the preservation in situation of cultural property endangered by public or private works in order to preserve historical associations and continuity. When overriding economic or social conditions require that cultural property be transferred, abandoned or destroyed, the salvage or rescue operations should always include careful study of the cultural property involved and the preparations of detailed records.

10. The results of studies having scientific or historic value carried out in connection with salvage operations, particularly when all or much of the immovable cultural property has been abandoned or destroyed, should be published or otherwise made available for future research.

11. Important structures and other monuments which have been transferred in order to save them from destruction by public or private works should be placed on a site or in a setting which resembles their former position and natural, historic or artistic associations.

12. Important movable cultural property, including representative samples of objects recovered from archaeological excavations, obtained from salvage operations should be preserved for study or placed on exhibition in institutions such as museums, including site museums, or universities.

### **III. Preservation and salvage measures**

13. The preservation or salvage of cultural property endangered by public or private works should be ensured through the means mentioned below, the precise measures to be determined by the legislation and organizational system of the State:

(a) Legislation;

(b) Finance;

- (c) Administrative measures;
- (d) Procedures to preserve and to salvage cultural property;
- (e) Penalties;
- (f) Repairs;
- (g) Awards;
- (h) Advice;
- (i) Educational programmes.

#### Legislation

14. Member States should enact or maintain on the national as well as on the local level the legislative measures necessary to ensure the preservation or salvage of cultural property endangered by public or private works in accordance with the norms and principles embodied in this recommendation.

#### Finance

15. Member States should ensure that adequate budgets are available for the preservation or salvage of cultural property endangered by public or private works. Although differences in legal systems and traditions as well as disparity in resources preclude the adoption of uniform measures, the following should be considered:

- (a) The national or local authorities responsible for the safeguarding of cultural property should have adequate budgets to undertake the preservation or salvage of cultural property endangered by public or private works; or
- (b) The costs of preserving or salvaging cultural property endangered by public or private works, including preliminary archaeological research, should form part of the budget of construction costs; or
- (c) The possibility of combining the two methods mentioned in sub-paragraphs (a) and (b) above should be provided for.

16. In the event of unusual costs due to the size and complexity of the operations required, there should be possibilities of obtaining additional funds through enabling legislation, special subventions, a national fund for monuments or other appropriate means. The services responsible for the safeguarding of cultural property should be empowered to administer or to utilize these extra-budgetary contributions required for the preservation or salvage of cultural property endangered by public or private works.

17. Member States should encourage proprietors of artistically or historically important structures, including structures forming part of a traditional group, or residents in a historic quarter in urban or rural built-up areas to preserve the character and aesthetic qualities of their cultural property which would otherwise be endangered by public or private works, through:

(a) Favourable tax rates ; or

(b) The establishment, through appropriate legislation, of a budget to assist, by grants, loans or other measures, local authorities, institutions and private owners of artistically, architecturally, scientifically or historically important structures including groups of traditional structures to maintain or to adapt them suitably for functions which would meet the needs of contemporary society; or

(c) The possibility of combining the two methods mentioned in sub-paragraphs (a) and (b) above should be provided for.

18. If the cultural property is not scheduled or otherwise protected it should be possible for the owner to request such assistance from the appropriate authorities.

19. National or local authorities, as well as private owners, when budgeting for the preservation of cultural property endangered by public or private works, should take into account the intrinsic value of cultural property and also the contribution it can make to the economy as a tourist attraction.

Administrative measures

20. Responsibility for the preservation or salvage of cultural property endangered by public or private works should be entrusted to appropriate official bodies. Whenever

official bodies or services already exist for the protection of cultural property, these bodies or services should be given responsibility for the preservation of cultural property against the dangers caused by public or private works. If such services do not exist, special bodies or services should be created for the purpose of the preservation of cultural property endangered by public or private works; and although differences of constitutional provisions and traditions preclude the adoption of a uniform system, certain common principles should be adopted.

(a) There should be a co-ordinating or consultative body, composed of representatives of the authorities responsible for the safeguarding of cultural property, for public and private works, for town planning, and of research and educational institutions, which should be competent to advise on the preservation of cultural property endangered by public or private works and, in particular, on conflicts of interest between requirements for public or private works and the preservation or salvage of cultural property.

(b) Provincial, municipal or other forms of local government should also have services responsible for the preservation or salvage of cultural property endangered by public or private works. These services should be able to call upon the assistance of national services or other appropriate bodies in accordance with their capabilities and requirements.

(c) The services responsible for the safeguarding of cultural property should be adequately staffed with the specialists required for the preservation or salvage of cultural property endangered by public or private works, such as architects, urbanists, archaeologists, historians, inspectors and other specialists and technicians.

(d) Administrative measures should be taken to co-ordinate the work of the different services responsible for the safeguarding of cultural property with that of other services responsible for public and private works and that of any other department or service whose responsibilities touch upon the problem of the preservation or salvage of cultural property endangered by public or private works.

(e) Administrative measures should be taken to establish an authority or commission in charge of urban development programmes in all communities having scheduled or unscheduled historic quarters, sites and monuments which need to be preserved against public and private construction.

21. At the preliminary survey stage of any project involving construction in a locality recognized as being of cultural interest or likely to contain objects of archaeological or historical importance, several variants of the project should be prepared, at regional or municipal level, before a decision is taken. The choice between these variants should be made on the basis of a comprehensive comparative analysis, in order that the most advantageous solution, both economically and from the point of view of preserving or salvaging cultural property, may be adopted.

#### Procedures to preserve and to salvage cultural property

22. Thorough surveys should be carried out well in advance of any public or private works which might endanger cultural property to determine:

(a) The measures to be taken to preserve important cultural property in situ;

(b) The amount of salvage operations which would be required such as the selection of archaeological sites to be excavated, structures to be transferred and movable cultural property salvaged, etc.

23. Measures for the preservation or salvage of cultural property should be carried out well in advance of public or private works. In areas of archaeological or cultural importance, such as historic towns, villages, sites and districts, which should be protected by the legislation of every country, the starting of new work should be made conditional upon the execution of preliminary archaeological excavations. If necessary, work should be delayed to ensure that adequate measures are taken for the preservation or salvage of the cultural property concerned.

24. Important archaeological sites, and, in particular, prehistoric sites as they are difficult to recognize, historic quarters in urban or rural areas, groups of traditional structures, ethnological structures of previous cultures and other immovable cultural property which would otherwise be endangered by public or private works should be protected by zoning or scheduling:

(a) Archaeological reserves should be zoned or scheduled and, if necessary, immovable property purchased, to permit thorough excavation or the preservation of the ruins found at the site.

(b) Historic quarters in urban or rural centres and groups of traditional structures should be zoned and appropriate regulations adopted to preserve their setting and character, such as the imposition of controls on the degree to which historically or artistically important structures can be renovated and the type and design of new structures which can be introduced. The preservation of monuments should be an absolute requirement of any well-designed plan for urban redevelopment especially in historic cities or districts. Similar regulations should cover the area surrounding a scheduled monument or site and its setting to preserve its association and character. Due allowance should be made for the modification of ordinary regulations applicable to new construction; these should be placed in abeyance when new structures are introduced into an historical zone. Ordinary types of commercial advertising by means of posters and illuminated announcements should be forbidden, but commercial establishments could be allowed to indicate their presence by means of judiciously presented signs.

25. Member States should make it obligatory for persons finding archaeological remains in the course of public or private works to declare them at the earliest possible moment to the competent service. Careful examination should be carried out by the service concerned and, if the site is important, construction should be deferred to permit thorough excavation, due allowance or compensation being made for the delays incurred.

26. Member States should have provisions for the acquisition, through purchase, by national or local governments and other appropriate bodies of important cultural property endangered by public or private works. When necessary, it should be possible to effect such acquisition through expropriation.

27. Member States should take steps to ensure that offences, through intent or negligence, against the preservation or salvage of cultural property endangered by public or private works are severely punished by their Penal Code, which should provide for fines or imprisonment or both. In addition, the following measures could be applied:

(a) Whenever possible, restoration of the site or structure at the expense of those responsible for the damage to it;

(b) In the case of a chance archaeological find, payment of damages to the State when immovable cultural property has been damaged, destroyed or neglected; confiscation without compensation when a movable object has been concealed.



## Repairs

28. Member States should, when the nature of the property so allows, adopt the necessary measures to ensure the repair, restoration or reconstruction of cultural property damaged by public or private works. They should also foresee the possibility of requiring local authorities and private owners of important cultural property to carry out repairs or restorations, with technical and financial assistance if necessary.

## Awards

29. Member States should encourage individuals, associations and municipalities to take part in programmes for the preservation or salvage of cultural property endangered by public or private works. Measures to that effect could include:

(a) Ex gratia payments to individuals reporting or surrendering hidden archaeological finds;

(b) Awards of certificates, medals or other forms of recognition to individuals, even if they belong to government service, associations, institutions or municipalities which have carried out outstanding projects for the preservation or salvage of cultural property endangered by public or private works.

## Advice

30. Member States should provide individuals, associations or municipalities lacking the required experience or staff with technical advice or supervision to maintain adequate standards for the preservation or salvage of cultural property endangered by public or private works.

## Educational programmes

31. In a spirit of international collaboration, Member States should take steps to stimulate and develop among their nationals interest in, and respect for, the cultural heritage of the past of their own and other traditions in order to preserve or to salvage cultural property endangered by public or private works.

32. Specialized publications, articles in the press and radio and television broadcasts should publicize the nature of the dangers to cultural property arising from ill-conceived public or

private works as well as cases where cultural property has been successfully preserved or salvaged.

33. Educational institutions, historical and cultural associations, public bodies concerned with the tourist industry and associations for popular education should have programmes to publicize the dangers to cultural property arising from short-sighted public or private works, and to underline the fact that projects to preserve cultural property contribute to international understanding.

34. Museums and educational institutions and other interested organizations should prepare special exhibitions on the dangers to cultural property arising from uncontrolled public or private works and on the measures which have been used to preserve or to salvage cultural property which has been endangered.

The foregoing is the authentic text of the recommendation duly adopted by the General Conference of the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during its fifteenth session, which was held in Paris and declared closed the twentieth day of November 1968.